

01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 ◆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합리적인 구매행위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매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광고자체의 내용을 잘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하는 행위 금지
- ◆ 소비자 오인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과장 광고, 기만 광고, 부당한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등으로 구분됨
 -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관련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두7632판결

표시·광고에 소비자가 본인의 사용 경험에 근거하여 당해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으로 평가·보증하거나 당해 상품의 구매·사용을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추천자의 개인적 경험을 넘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가능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그 추천·보증의 내용이 추천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추천자의 경험내용이나 판단내용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거나 학계 등 관련 전문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가 아니라면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가 그 소비자가 추천·보증하는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벌칙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제재조치	내용	관련규정
시정조치	•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 광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임시중지명령	• 위반행위가 명백할 경우 또는 그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지 가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과징금	•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 거짓·과장 광고

◆ ‘거짓·과장 광고’란 광고 내용과 제품·서비스의 실제 내용이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림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광고를 의미함

관련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5.05.28 선고 2014다24327 판결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4.1.23 선고 2012다84417,84424,84431

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거짓·과장광고 사례(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4371판결)

이미지	내용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포털사이트 초기 화면에 ✓ SALE 7,900원 속삭 이라는 배너 광고를 설치 하여 슬리퍼를 광고 하였으나 실제 소비자가 나 이키 슬리퍼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옵션 주문을 통하여 '+13,900'으로 표시된 부분을 선택해야 하고 주문 및 결제 화면에서 21,800원을 지불해야 함에 따라 실제 상품내역과 배너 광고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 SALE 7,900원 속삭 배너 광고는 전자상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의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표시광고분쟁, 부정경쟁, 공정거래, 조사자문, 형사/민사소송, 손해배상, 계약분쟁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